

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용구 계약 수정 요청 안내

귀 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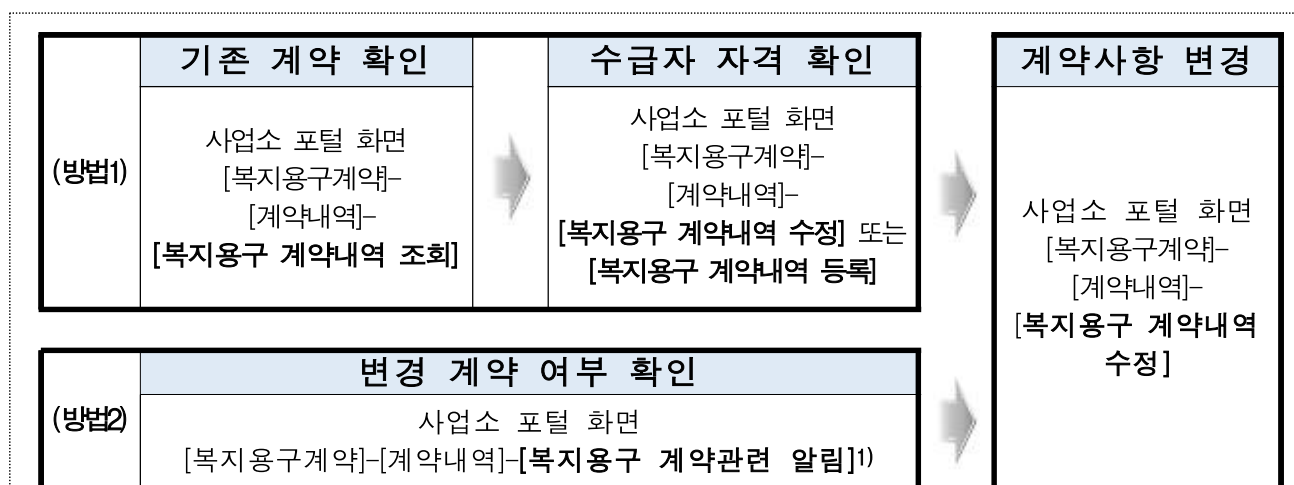
감경제도 개편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가 개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감경대상자, 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부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으로 기존 복지용구 계약 수정이 필요하므로 복지용구사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수급자의 자격(본인부담률)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(계약자)에게 변경사항을 안내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, 변경된 계약사항을 공단에 전산 입력·통보하여야 합니다.

< 감경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>

자격	기초	의료급여		감경			일반
구분	변경 없음	기존	변경	기존	변경		변경 없음
감경률	100%	50%	60%	50%	60%	40%	0%
본인부담률	0%	7.5%	6%	7.5%	6%	9%	15%

따라서 감경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률이 7.5%에서 6% 또는 9%로 변경되었으며, 일반수급자도 감경적용일(2018.8.1)부터 감경대상자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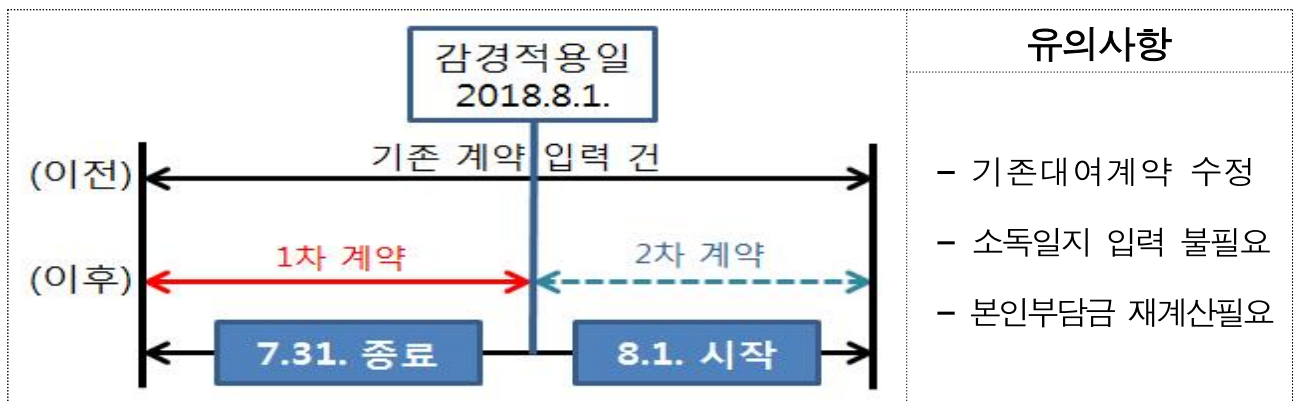


1) 복지용구 계약(감경포함) 관련 안내 화면 신설 ... [방법2] 참조

감경적용일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서는 2018.7.31.로 종료하고, 바뀐 본인부담률에 따라 수급자(계약자)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단 전산에 입력·통보하여야 합니다.

1 대여계약

- 공단에 통보한 기 계약 대여기간에 감경적용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 - 본인부담금 재계산후 수급자(계약자)와 대여계약서 재작성
 - 기존 대여계약을 2018.7.31.로 종료일 변경 후 2018.8.1.부터 대여종료일까지의 계약 등록



2 판매계약

- 판매일자가 감경적용일 이후인 판매계약을 감경적용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
 - 본인부담금 재계산후 수급자(계약자)와 판매계약서 재작성
 - 기존 판매계약을 취소하고, 판매계약 재등록

※ 감경적용일 이전에 입소이용의뢰서(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)를 발급받으신 기초·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※ 안내문의 : 대표전화 1577-1000 → 0번(상담원 연결) → 4번(노인장기요양) → 1번(노인장기요양 일반) 또는 2번(노인장기요양 기관상담)

[붙임]

☐ 사업소 포털 전산화면 매뉴얼 ... [방법2]

○ 복지용구 계약 관련 알림

복지용구 계약관련 알림 npia203m01

복지용구계약> 계약내역

계약년도: 2016 * 사유: 감경자격 변동 조회 ①

자격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필요내역

NO	사유발생일	사유	비고		수급자인정번호	수급자명	SEO	인정유효기간	적용구간	품목명	제품명	복지용구표준코드		판매일자	대여시작일	대여종료일	적용금액	계약수정
			이전	이후								제품코드	제조번호					
1	2017-05-01	감경자격 변동	15%	6%	L22	김동욱	101	2015.07.30 ~ 2017.07.29	2016.07.30 ~ 2017.07.29	수동휠체어	MIRAGE 7(22D)	M18030043001	10		2016-07-30	2017-07-23	343,570	계약수정 ⑤

조회결과 1건

① 계약년도 및 사유 조회 : 변경이 필요한 계약내역을 계약년도 기준으로 조회함

② 사유발생일 및 사유 :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따른 사유 내역 및 발생일자 표기

③ 비고 : 본인부담률의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의 값 표기

④ 수정이 필요한 계약내역 정보

⑤ 계약수정 : 계약수정 버튼 클릭하면 “복지용구 급여내역 수정” 화면과 연결 ... 수정하면 알림화면에서 사라짐

○ 복지용구 계약내역 수정

복지용구 계약내역 수정 npi2020m01 복지용구 계약내역

수급자성명 신 조회 ①

장기요양인정번호 L- L00

계약 당사자

수급자성명	신	장기요양인정번호	L00	생년월일	19-15
장기요양등급	4 등급	대상자구분	강경	본인부담율	9.0 %
유효기간	2017-11-10 ~ 2018-11-09		시말일자		

기관정보

기관명	기관기호	대표자명	계약(등록)일자	조회
벤티	3		2018-03-02 - 2018-08-23	검색 ②

구입(판매)내역

품목명	제품명	금액	판매일자	계약 삭제	대리인 정보				수정구분	계약 변경 사유 (30자 이내)	계약 번호
					성명	생년월일	관계	연락처			
2018-03-02 ~ 2018-08-23 기간에 해당하는 판매제품 계약정보가 없습니다.											

대여내역

품목명	제품명	대여시작	대여종료	대여종료일 변경	연장계약	금액	계약 삭제	대리인 정보				수정구분	계약 변경 사유 (30자 이내)
								성명	생년월일	관계	연락처		
전동침대	TBS-300 S03090048103-	2018-02-02	2018-08-23	2018-08-23	N	₩511,020		신	19-15	본인	010	선택	
욕창예방 매트리스	YH-0301 H12060031002-	2018-03-02	2018-08-23	2018-08-23	N	₩120,470		신	19-15	본인	010	선택	
수동휠체어	KNAH-10 M18030113003-	2018-05-03	2018-08-23	2018-07-31	N	₩97,090		신	19-15	본인	010	-	

③ ④ ⑤ 수정내역전송

⑥ [복지용구 계약내역 등록]화면으로 이동하여 2018-07-31 이후 날짜의 계약내역 등록
※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서 재작성한 후 본인부담금 정산 후 계약 체결한 내역 통보

- ① 수급자성명 및 인정번호 : 계약수정이 필요한 수급자 정보 입력 후 조회
- ② 계약(등록)일자 : 수정이 필요한 계약일자가 속한 기간을 입력하고 검색
- ③ 대여종료일변경 : 변경할 대여종료일(기존 자격종료일:2018.7.31.) 입력
- ④ 수정구분 : “자격변동” 사유선택
- ⑤ 수정내역전송 : 변경된 계약내역을 공단에 전송
- ⑥ 복지용구 계약내역 등록화면에 재작성한 공급계약서 입력 후 통보